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3. . .	
연월일	(제 회)	

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화주,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,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이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과적하는 경우 화주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도로법이 개정(공포 '22.11.15., 시행 '23.5.16.)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(시행령 별표7 제2호 개별기준 카목)

- 위반행위 항목에 “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”를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2. 00. ~ 3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해당없음

- 과태료 부과사항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

대통령령 제 호
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도로법 시행령 [별표 7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5조제1항 관련) 제2호 개별기준 카목의 “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·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”를 “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·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도로법 시행령 [별표 7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5조제1항 관련) 1. (생략) 2. 가. ~ 차. (생략) 가. <u>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·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</u> 타. ~ 파. (생략) 3. (생략)	도로법 시행령 [별표 7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5조제1항 관련) 1. (현행과 같음) 2. 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 가. <u>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·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</u> 타. ~ 파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926